

「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9월 5일, 박춘희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박춘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민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, 군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(안 제5조)
- 라.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(안 제6조)

마.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및 지원근거 마련(안 제7조)

바. 보행안전문화 활성화(안 제8조)

사.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, 구성, 운영 규정(안 제9조 ~ 제 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의 전환을 도모하고

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,

보행불편 해소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.

○ 「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」에서

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에 필요한 사항을

규정하여 상위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문화

확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.

○ 검토결과,
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